

제435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록
(임시회)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5월19일(화)

장 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4)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6)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1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3)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18.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2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2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2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2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1)
3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3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3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3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4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47.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7384)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49. 전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5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4.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5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5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6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6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6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6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6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7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7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7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7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7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8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9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95.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96.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9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9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10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1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103.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1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11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10
1.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10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1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11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11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11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11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11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4)	11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1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1
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11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11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6)	11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11
1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3)	11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11
18.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11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11
2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11
2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11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11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11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11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11
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11
2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11
2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11
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12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12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12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12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1)	12
3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12

3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12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12
3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12
3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12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12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12
4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12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12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12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12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12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12
47.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4) 12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12
4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12
5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12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12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12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12
54.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12
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13
5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13
5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13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13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13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13
6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13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13
6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13
6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13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13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13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13
6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13
6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13
7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13
7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13
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13
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13
7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13
7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13
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13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13
7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13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13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75)	13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14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14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14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14
8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14
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14
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14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14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14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14
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14
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14
9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14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14
95.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14
96.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14
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14
9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14
9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14
10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14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14
1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14
103.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14
1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6)	14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15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15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15
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15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15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15
11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5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이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111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오늘 오후와 내일로 예정된 소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법률안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과 협의하여 해외 출장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불출석을 양해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위원장 이철규 다음으로 소위 위원 개선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미애 위원님의 의원직 사퇴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의 소위원에 장철민 위원님을 개선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개선된 소위원회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8)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1)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7)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80)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6)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43)
7.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74)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54)
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5)
10.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53)
11.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779)
12.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3)
13.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6219)
1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46)
15.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20)
1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3)
17.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8)
18.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00)
19.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25)
20.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5)
21.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68)
22.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87)
23.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40)
2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6)
2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3)
26.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97)
27.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99)
28.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17)

29.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58)
30.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19)
3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11)
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36)
3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81)
3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4)
35.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66)
36.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60)
37.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1)
38.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0)
39.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09)
40.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13)
4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793)
4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7)
4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4)
44.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281)
4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37)
4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11)
47.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384)
4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8)
49. 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1)
50.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09)
5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2)
5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9)
5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3)
54.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4)

55.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2)
5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82)
57.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83)
5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0)
59.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2)
6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5)
6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8)
6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4)
63.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4)
64.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3)
65.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519)
6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743)
67.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77)
68.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67)
69.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35)
70.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98)
7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91)
7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1)
7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1)
7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37)
7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49)
7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49)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19)
7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18)
79.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종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05)
8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 2216575)
8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862)
8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94)
8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38)
8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418)
85.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6)
86.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12)
87.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53)
8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7)
89.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9)
9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75)
9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42)
92.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3)
9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080)
9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824)
95.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06)
96. 중소기업 인공지능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70)
97.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85)
9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52)
99.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30)
100.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686)
10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60)
102.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7)
103.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150)
104.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7166)

- 10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837)
- 1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904)
- 107.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140)
- 1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20)
- 10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290)
- 1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524)
- 111.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17)

(10시11분)

○위원장 이철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1항까지 경제안보 침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이상 111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의 구체적인 명칭과 내용은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단말기 자료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먼저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법률안에 대해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요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형식승인에서 제외되는 계량기에 대한 표시사항을 신설하고 불법 계량기 유통 방지를 위한 조사·감시체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표시기준 위반 시 정정 요구와 벌칙 부과, 계량기 양도 관련자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소비자감시원의 확인업무 확대 등을 통해서 불법 계량기의 유통관리와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쪽입니다.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법안입니다.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제정안은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 등 미래첨단산업 분야의 발전 과정과 기술 축적 성과를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시하기 위한 국립미래첨단산업박물관을 설립하고 이를 법인 형태로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은 미래첨단산업 관련 자료를 산업문화 자산으로 보존·활용하고 산업계·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박물관 설립과 운영에는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중장기적인 재원 조달 방안과 운영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3쪽입니다.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강승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무역보험 관련 업무 수

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및 가상자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사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회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안정적인 운용에도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해서 정보제공 요청 범위를 필요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동법 개정안은 공사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보험·보증 연계투자 및 팩토링 업무를 수행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 계정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공사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 직접 투자하고 팩토링 사업으로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를 지원함으로써 중소·중견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RG특례, 보증보험 공급 등 고위험 사업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운영함으로써 사업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종민·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석유정제업자 등으로 하여금 석유제품 공급 시 공급가격을 사전에 고지 또는 통보하도록 하고 실제 정산 시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의 사후정산 관행에 따른 정산가격의 불확실성이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에 전가되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정진욱·강승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 협의심사를 폐지 또는 축소하고 위해성심사위원회 설치를 통해 유해성심사 절차를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위해성심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협의심사 폐지 또는 축소에 따른 심사의 신속성을 제고할 필요성과 위해성 분야별 사전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이차전지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입니다.

권향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제정안은 정부가 이차전지 특구를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차전지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등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의 혁신발전 지원사업 등 적극적인 지원제도를 실시할 경우에 이차전지산업의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제정안과 유사한 취지로 이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차전지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미 조선산업 협력 및 지원 특별법안입니다.

허성무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제정안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조선산업 협력 체계를 규정하는 특별법안입니다.

2026년 5월 양국 간에 조선산업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 조선 파트너십 이니셔티브가 체결되는 등 양국 간 조선산업 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조선산업 협력의 기본 틀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산업부는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 상당수가 현재 양국 간 협의를 통해 구체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협의 내용이 확정된 후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법률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김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법 개정안은 특허소송에 지정전문가가 직접 현장에 출입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전문가 사실조사와 법정 외의 장소에서 당사자에 의한 신문을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법정 외 진술 녹취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소송 제도하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 및 손해액 산정에 관한 증거 수집이 어려워 미국, 유럽 등 특허 선진국의 증거개시제도를 참고해서 이른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지식재산의 정당한 가치보장 및 권리자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정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식재산처 등 여러 부처에서 또 여러 협회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총 15건의 개정안이, 유사 법률안이 발의·회부되어 있으므로 병합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해 성소미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소미 전문위원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에 대한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구자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사용 범위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업무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촉진지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직원과 그 가족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할 수 있는 정주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지원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기금 재원은 대부분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자본투자 성격의 주거·문화 시설을 위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금 건전

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처의 입장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김동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중소기업 기업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로 인해서 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지배구조 불안정, 흑자도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기업승계에 특화된 법률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신뢰도 높은 기업승계 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정안은 자녀 부재, 당사자 기피로 필연적 한계가 발생하는 기존 친족승계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승계 방식을 증여로 한정하면서 이차적으로 승계 지원 등록기업이 사업 재편을 하게 되면 상법상의 각종 특례를 적용받도록 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 지속성장이라는 법안 취지를 감안할 때 친족 증여라는 승계 방식 외에도 제삼자 승계, 인수합병 등 다양한 수요가 있을 수 있고 무상으로 기업을 증여받은 자에게 분할, 합병, 영업양도 등 사업 재편 시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업종 변경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가업승계 제도의 취지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강승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의 자료제공 요청 대상에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과세정보 요청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채무자가 거래소에 보유한 가상자산을 조기에 특정·압류할 수 있어서 은닉재산 파악과 채권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기술보증기금 구상권 회수율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김원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현행법상 주주총회 결의사항인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정관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써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행사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재 확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벤처스타트업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보상전략을 수립·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핵심 인재에 대한 보상 실현 시점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어서 임직원의 조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부여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스톡옵션 부여 요건의 완화는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경영진의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 행사 제한 기간의 단축은 단기 이직을 통한 이익 실현 행태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법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입니다.

김남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패션봉제산업은 섬유패션산업의 핵심 후방 산업이자 도심 제조업의 기반으로 기여해 왔지만 생산기지 해외 이전에 따른 생산 규모 축소와 인력 고령화로 산업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명확하게 입법화되지 않고 섬유패션산업의 일부로 취급되고 있어서 지원에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제정안은 구조적 쇠퇴에 직면한 패션봉제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산업생태계 붕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산업통상부 소관 섬유패션산업 정책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필요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대체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이시고요?

○김성원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은요?

○김종민 위원 저는 대체토론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대체토론이지요?

그러면 김성원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삼성전자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국가경제에 상당한 위험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도 반드시 이 점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대체토론도 하지만 법안에 대한 대체토론이 끝난 이후에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현안질의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해 주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예, 알겠습니다.

원래 오늘 회의는 법안 상정이고 내일 소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의결하기로 양당 간사에 합의가 됐고 또 오늘 토론도 법안 관련 대체토론을 하기로 합의된 사안입니다.

다만 이후에 삼성전자 노사관계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지금 중노위가 중재 중에 있는데 이걸 아마 여야 위원님들도, 특히나 반도체가 우리 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할 때 간략히 현 상황 정도쯤은 장관님께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진행 상황 보고를, 사전에 보고해 달라고 자료 준비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업무를 계속 산업부장관과 산업부에서 핸들링해 왔기 때문에 이 진행 상황을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간사님들……

○김원이 위원 장관님 어떠신가요? 간단하게 현안 정도는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지금 현재 진행되는 현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요. 양당 간사 간 합의 후에 진행된 사안이기 때문에 다른 현안질의처럼 상세하게는 못 한다 하더라도 개략적으로 현재 진행 상황을 보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여야 위원님 몇 분만 대표적으로 나서서 궁금한 부분 질의를 하시면 아시는 범주 내에서 간략히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민 간사님.

○박성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양당 간사님이 이렇게 협의를 해 주셨으니까요, 상정된 법률 안.....

○김원이 위원 저도 의사진행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대체토론 이후에 간략히 보고를 받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사전에 의논했던 내용은 아니지만 정부 측에서 동의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파업 위기가 갖고 있는 대한민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반도체산업에 대한 영향 그리고 노사 간에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용 그리고 이게 협력업체들한테 미칠 수 있는 영향 그리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라든가 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이 워낙 지대하게 크기 때문에 이걸 장관님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공유해 주시는 게 적절하겠단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장관님 어떠신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대체토론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가급적 소위 위원님들은 소위에서 충분히 토론해 주시고요, 소위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종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민 위원 세종시의 김종민입니다.

산자부장관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오늘 회의가 우리 전반기 산자위의 마지막 회의 겸 질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상정된 법안에 포함돼 있지는 않은데 이번에 꼭 우리가 입법을 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금 늦춰지고 있다, 그래서 이 점을 장관님께서 꼭 유념을 하시고 빨리 속도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추구를 드리려고 발언 신청을 했는데요.

특구 관련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걸 장관님 동의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종민 위원 지금 우리나라 특구가 한 2500개 가까이 돼요. 종류만 해도 87개가 됩니다. 이게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어떤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특구 제도가 실효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트랜스포메이션(transformation)이 돼 가고 있는데 여기에 발맞춰서 변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글로벌 경쟁이 되니까 인재를 유치하고 기술과 기업이 직결되고 하는 이런 특구의 목적에 맞추려면 규모가 커져야 된다 이런 정도의 문제의식 갖고 있지요, 지금?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입법 검토를 하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자료나 발표를 보니까 한 가지 중요한 게 빠져 있어요, 왜 이 특구 제도를 손질해야 되는지 핵심이. 기술과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서 핵심 포인트가 저는 데이터 문제라고 봐요. 지금 기술산업이 데이터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고 이게 꽤 오래됐잖아요. 데이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규모의 경제 또는 규모의 기술, 규모의 산업, 규모가 되게 중요한 분야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라는 말도 나오지요.

그런데 우리가 특구 지정을 특정한 분야로 특정하게 해 놓으면 그 안에서 아무리 특구라고 규제 완화를 해도 거기서 데이터를 결집해 봐야 별로 쓸모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라는 게 임계질량 이상이 규합돼야 기술력도 생기고 기업도 여기에 참여도 하고 인재도 모이고 하거든요. 전 세계가 이렇게 한 지가 오래됐는데 대한민국 특구만 특정하게……

대한민국에 대표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있는 세종하고 대구예요. 세종을 보면요 대한민국의 정책정보 관련 지식정보 데이터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전체를 특구화시켜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거브테크 산업을 일으키는 시도가, 제가 지금 이것을 2년째 얘기하고 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가요. 올해 예산에도 별로 안 담겨 있더라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거브테크 특구를 제대로 만들잖아요? 아시아의 거브테크 허브가 됩니다,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행정 데이터나 정책 데이터를 가지고 누가 갖다 쓰겠습니까? 중국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런 걸 모아 내면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될 수 있어요.

대구 같은 경우 특구가 여덟 개나 돼요. 글로벌혁신특구, 규제 완화, 연구개발…… 다 구마다 특구가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대구가 로봇도시 한다는 거 아닙니까? AI 로봇, 퍼지컬 AI 세계 선도도시 한다는 건데, 아니 데이터를 모으려면 대구 시내 전체를 특구로 지정하지 않으면 특구라는 개념이 성립이 안 되지요. 구별로, 산단별로 특구 지정해 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구시 전체를 메가특구로 빨리 지정을 해야 로봇도시가 되든 AI도시가 되든 할 거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 제조업, 물류산업 이 수준에서 특구 제도가 지금 멈춰 서 있는 겁니다.

대구도 대구 전체를 AI 로봇 메가특구로 지정해서 대구시 전체에 특구 효과가 나타나게 해야 기업도 오고 기술도 오고, 그래야 AI 세계 로봇 선도도시로 발전할 수가 있지요. 이 데이터 문제에서 규제 완화하고 근본적인 정부의 대책……

선전시라는 데 있지요, 선전시? 선전시가 AI 로봇 세계 선두권입니다. 중국 선전시 인구가 1800만이에요. 이 시 전체가 특구입니다. 이 시 전체가 규제 완화 특구예요. 여기에 대구가 한 오육십만 구 단위 특구를 가지고 이게 경쟁이 됩니까? 이 메가특구법 빨리 속도를 내서 이 문제에 관해서, 세종이나 대구나 기타 지역에 메가특구 지정을 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두 군데만 얘기를 했는데, 빨리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제도 개선에 산자부가 좀 앞장서야 된다 그런 당부를 좀 드리고요. 후반기 국회 시작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에서 빨리 속도를 좀 내셔서 입법하시고, 저도 법안을 준비를 해 볼 테니까 속도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에 정말 백분, 200% 공감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지금 메가특구법이 진도를 한참 나가고 있는데요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규모도 규모지만 이 데이터산업, 데이터를 직접 수집하고 또 관리하는 데 개인정보 보호법 등 장애 요소들이 좀 있지요? 이런 법안들이 범정부 차원에서 부처 이기주의를 걷어 내고 대비해서 신속히 대한민국의 데이터산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게끔 부처 내 협의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종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민 위원 그리고 거브테크 관련해서도 꼭 좀 살펴봐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 빨리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철규 상정된 법률안 관련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자근 위원 저 할 거예요.

○위원장 이철규 법안 관련?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좋습니다.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5분 안에서 쓰면 되지요?

○위원장 이철규 예, 법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를……

○구자근 위원 자료 요구 검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철규 그렇게 하십시오. 다 안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구자근 위원 장관님, 모두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 시간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대미 투자 진행 상황 관련해서 자료 요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 한 5월 14일 정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베센트 미국 재무부장관하고 만나셨는데 거기서 통화스와프 제안했다는데 이를 두고서 여러 가지 추측이 많이 있습니다. 곧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혹시 발표하실 계획이지요. 그렇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현재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 투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우리 입장에서 봐서 상당수 상업성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우려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어요. 장관께서는 합리적으로 잘 진행하겠다고 지난번에도 여기서 말씀하셨고 하셨는데, 대미투자 프로젝트 관련해서 협의 진행 상황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 후보들이 계속 진행을 하고 있지 싶은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으면 상임위 차원에서 그래도 혹시라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라도 좀 해 주시면 대국민 궁금증 또 기업들이 궁금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중기부장관님, 81번에 제가 송재봉 민주당 의원님하고 같은 법안이 내져 있는데 이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영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 부실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껏 지원 제도는 소상공인 이분들이 요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체제였는데, 실질적으로 한 50% 정도가 이 제도적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인지를 못하고 있

다는 게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부나 우리가 선제적으로 하자는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니까 요건이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혹시라도 그런 기준이나 그런 제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이 부분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올해부터 미리 위기에 있는 대상으로 해서 알림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알림통을 바로 보시고 융자나 이런 부분에 대한 요청을 주신 분들도 계셔서요, 이 데이터를 보고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된 부분 상의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정하고 알림통 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구자근 위원 그렇지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나 또 한편 서울시에서 진행했던 유사 사례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예, 그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구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관련해서 대체토론에 나서실 위원님들이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토론은 이걸로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8항까지 이상 68건의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 소위원회로, 의사일정 제69항부터 제111항까지 이상 43건의 법률안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로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법률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대체토론과 소위원회 회부 절차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오늘과 내일 양일간 열리는 소위에서 이들 안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그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장관님, 잠시 전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여야 간사 위원님들과 위원님들의 합의로, 삼성 반도체 노사관계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사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한참 2차 사후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발언에 대해서 사실은 제 전화기, 페이스북 보면 물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분도 있지만 상당수가 아주, 노동자 측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섭섭해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혹시라도 사후조정에 영향을 줄까 봐 조심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제 발언에 제약이 있다는 부분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다만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파업은 저희는 안 된다는 그런 정말 절박한 마음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노동자들이 원하는 몫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고, 하지만 삼성전자 파업이 가져올 파장들을 생각하

면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발생하면 무슨 악영향이 생길지 아는 것조차 우리 사회가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절박하고 아쉬운 마음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후조정이, 어제부터 정말 마음 그리고 몸가짐 하나 조심스럽게 온 마음을 간절한 마음으로, 참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있는 심정인데요. 부디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온 국민이 바라는 결과가 나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장관님, 향후 정부의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발표하기는 힘들겠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정부가 언제부터 중재를 시작하고 또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지는 위원님들이 아시고 국민들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분 부분은 보도가 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좀 더 시간별로, 날짜별로 대략적으로 정리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신다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 편하고 우리 국민들도 좀 더 편리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 사안별로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지만 전반적인 흐름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작년 11월부터 노사 교섭이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중노위 조정회의가 진행됐고 그리고 금년 3월 9일에서 한 18일 정도까지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때 투표가 한 93%였는데 재적 68%로, 과반 찬성으로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측 제안으로 교섭을 하다가 노사 이견으로 중단된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측이, 어제 결론이 났습니다만 위법 쟁의행위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이 4월 16일 날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부터 중노위 제안으로 노사 사후조정이 처음 실시됐는데 그게 일단 결렬됐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제안이 5월 16일 날 사후조정 공식 참여 제안이 있었고 극적으로 2차까지 진행이 된 상황이고 그런 바탕하에서 어제부터 사후조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후조정이 안 되면 공식적으로는 파업이 5월 21일부터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파업의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현재 상황이 그 정도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으로도 질문하시겠지만 사측이 법원에다가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결정이 났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뭘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어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났던 거고 사측 제기한 내용들이 많이 인용이 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안전보호시설이나 보안작업 그리고 시설 점거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측 의견이 인용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아침 보도를 접해 보니까 주말이라든가 주중, 평상시에 대비태세지요? 근무라든가 이것을 유지해야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것을 놓고 사측과 노동자 측이 서로 해석을 달리한다고 하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양해해 주신다면 그 내용조차도 제가 지금 어느 게 맞다 틀리다를 언급하는 것은 일단……

○김성원 위원 아니, 그것은 상관없어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부분은 한번……

○김성원 위원 말씀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너무 정부 측에다 막 그렇게 하지는 말지요.

○김성원 위원 정부 측이 협조를 안 하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런데 법원의 결정문을 보면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 한글을 대한민국 언어로 문자와 표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해석마저도 아전인수로 해석한다면 국민의 공감을 받기가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거나 또 궁금해서 확인하실 게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봉 위원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철규 아니에요, 대표로 한 두 분 정도씩만……

○김원이 위원 아니, 대표로 한 명 정도 그냥…… 이것은 궁금한 현안이니까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철규 여야에 한 두 분씩만 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니까……

○김원이 위원 여러 명 하지 말고 한 분씩만 하지요.

○서일준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서일준 위원님.

○서일준 위원 위원장님, 오늘 산자위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래서 삼성 전자 문제도 중요하지만 다른 현안도 있으면 질의할 시간을 좀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철규 서일준 위원님, 지금 다른 방식으로 의견을 전부 다 개진하고 계시고 하니까…… 오늘 아마 여러 가지로 바쁠 텐데 우리가 그래도 전반기에 처리할 법안을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이런 차원에서 바쁜 일정에 회의가 소집이 됐고 여야 간사 간에 가급적 오늘은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중심으로 하자라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하지만……

○서일준 위원 기존에 상정된 법안이 있는데, 토론을 하다가 3월 달이나 4월 달 법안소위에 다시 상정하자 했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 됐어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시는 것은……

○서일준 위원 그래서 오늘 산자소위나 중기소위에서 법안 심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심사하다가 잠시 보류한 것을 왜 전반기의 마지막까지 상정을 안 하나 하는 이야기예요.

○위원장 이철규 알겠습니다.

잠시 한 두 분씩 해서 삼성 반도체 관련 현안질의 기회를 한 5분씩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늘 반도체 쪽에 관심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연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주 위원 아마 모든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과 걱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정상회담 속에서 미중 간에 혹시 반도체 딜이 그 여파로 있지 않을까. 또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후에 뒤를 이어서 사실 중국의 창신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창신메모리에 혹시 미국이 반도체 기술을 허용하거나 혹은 넘기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걱정들을 우리 투자자들 또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사이클이 사실 그렇게 크게, 길게 우리가 격차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일이 년, 길어 봐야 한 이삼 년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결코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 금방 따라잡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정말 노사 간의 대화를 통해서 파업만큼은 꼭 막아야 한나라는 굉장히 절박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아마 노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사실은 이게 두 회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양대 산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두 회사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SK하이닉스하고의 형평과 또 자존심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특히 상여금의 상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정부에서도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 보면 사실은 상여금 문제라든가 이런 근로자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이런 첨단전략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여금이 아니라 스톡옵션 같은 방식으로든 해결하는 방안들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미래에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크게 나는 경우에는 이런 방식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제안을 드려 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과연 노동자의 상여금으로 고착화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또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되는데, 이게 산업 생태계에 골고루 배분이 되어야만 장기적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협력업체 그리고 우리가 대만의 TSMC 나 이런 것들을 예로 많이 들지만 연구개발이라든가 소부장이라든가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 전체에 이익들이 다 퍼져야, 그래야 장기적으로 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대부분 대기업에 많이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취약한 부분들이, 이렇게 이익이 났을 때 대기업에 집중이 되고 그리고 그 대기업의 이익들이 대기업의 종사자들한테만 배분되고 그 안에서 노사 간에 분규가 일어나는 쪽으로 만약에 해결이 끝나 버리면……

사실 이번에는 우리가 노사분규로 이렇게 보고 있지만 과연 그 밑의 협력업체 그리고 연구개발, 설계 그리고 소부장, 이러한 거대한 산업 생태계의 존속과 성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주 강력하게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는 첨단전략산업의 장기적 성장은 정말 어려워진다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어쨌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된다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형평과 자존심의 문제를 우리가 고려는 하되 이번 파업을 통해서

라인이 멈추는 것만큼은 꼭 같이 함께 합심해서 막을 수 있도록 잘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이언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장관님, 지금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요. 지금 중노위가 중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이럴 때 장관님께서 뒤로 빠지시는 게 아니라 소신과 입장은 명확하게 밝히시는 게 중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폭주를 당장 노조는 멈춰야 된다’ 이러한 메시지가 산업부장관으로부터 나와야지 중재가 되는 거지, 지금처럼 그렇게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아무 말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책임 회피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산에 제실 때 노조 협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해 봤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어떤 것 같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개별 회사에 있을 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차이는 좀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지금 장관의 상황이 아니라 그때 두산에 있을 때 노조랑 협상과 지금 삼성전자 노조와의 협상을 보면서 어떤 게 더 난관인 것 같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이 훨씬 더 난관인 것 같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 이유는 뭘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제가 몸담았던 회사는 오랫동안 노사 경험이 있어서 노와 사가 서로를 이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협상도 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아쉽게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적은 것도 이유가 되는 것 같고……

○김성원 위원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그전에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없었는데 왜 지금 노조 파업이 이렇게 생길까?’,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이러한 노조 파업에 대해서 ‘그전까지는 발생이 없었는데 왜 있나?’,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답변은 일단은 좀 유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뭘 유보를 해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 거지. 그것 알면서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성과급까지 노사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김성원 위원 두 번째, 저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 당연히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관께서도 동의하시겠지요. 국가경제와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무모한 파업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장관께서도 같이 동의하시는 바 아니겠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성원 위원 ‘주가 폭락으로 코스피 5000 만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의 전 재산이 걸린 금융시장까지 조롱하는 행태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분노하고

또 박탈감 느끼지 않겠습니까? 장관 입장에서 이렇게 가는 것은 노조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저는 오늘내일까지 정말 노사가 최선을 다해서……

○김성원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만 답변을……

노조가 지금 코스피 7000, 8000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5000까지 떨어뜨리겠다고 하는 것이 선을 안 넘은 거예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포함해서 노사가 정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김성원 위원 선을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잠깐만, 이 정도도 못 물어봐요? 장관님, 이 정도도 답변 못 합니까? 코스피 5000까지 만들겠다고 하는 노조의 발언이 금융시장 전체를 조롱하는 건데 그 점에 대해서 ‘이것은 노조가 선을 넘었다’ 이 발언도 못 해요,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오늘내일 노사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면 국민들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의 하나, 역대 연봉 받으면서 노조가 조합비의 최대 10%, 최대 1000만 원을 지도부의 직책수당으로 편성해서 회사 급여 외에 별도 수당까지 챙기는 귀족노조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도 그 부분 언론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봤습니다.

○김성원 위원 맞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되면 귀족노조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오늘은 답변을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김성원 위원 이 정도는 협상을 하실 때 정확하게 정부의 입장, 산업부의 입장을 장관께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중노위에서의 중재에 더 도움이 된대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위원님, 오늘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성원 위원 한마음이에요, 다 똑같이.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래서 일단 혹시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김성원 위원 파업이 절대 돼서는 안 되고 국가경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게 한마음인데……

1분만 더 주시지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1분만 더 드려요.

○김성원 위원 장관님, 이것 답변 못 하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오늘내일은 정말 노사가 한마음으로 잘 타협해 주기만을……

○김성원 위원 그럼요. 당연히 저희도 같은 마음인데, 협상이라고 하는 게 내주는 카드가 있고 받는 카드가 있고 한데 정확한 정부의 입장을 산업부장관이 얘기를 해 줘야지 협상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도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정부의 입장은 이미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고 지금 노사가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잘 타협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성원 위원**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은 한마디로 국민경제를 볼모로 한 파업은 절대 안 된다, 이것 맞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맞습니다. 파업은 안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성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모든 분들께 시간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김원이 간사님하고 서일준 위원님 두 분께만……

○**권향엽 위원** 그리고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요?

두 분께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위원** 위원장님, 저도 간단하게 한마디만 추가해서 좀 드릴게요.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만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김종민 위원님 조금 기다리시고요. 나중에……

권향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권향엽 위원** 오늘이 사실상 우리 산자위 회의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이 발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아직 못 했습니다. 우리 상임위가 22대 들어서 실시한 국정감사 두 번에 걸쳐서 했었는데, 결과를 아직 처리를 못 했는데 이게 자료 요구를 해서 보니까 각 상임위마다 조금씩 달라요. 최근 5년 동안의 자료를 보니까 정무위나 국토위는 모두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반면에 교육위는 한 번도 채택을 못 했고 우리 산자위도 마찬가지로 2021년도 채택을 마지막으로 5년 동안 한 번만 채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법에 보면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작년 10월에 국정감사를 했으니까 늦어도 올 1월 말에는 처리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니까 정부와 공공기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처리 의무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은 선택이 아니라 법률상에 명시된 의무이자 대국민 보고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 입법부와 행정부가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을 투입해서 국정감사를 실시한 국가의 공식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록으로 남기고 후속조치까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법안소위가 있고 내일 다시 한번 회의가 열린다면 이것은 마무리하고, 2025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마무리하고 우리 상임위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여야 간사님들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상정 문제를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원이 위원님 반도체 관련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위원** 사실은 삼성이든 어디든 한 기업의 임금 협상이나 노사관계에 대해서 정부나 정치권이 나서서 발언하는 게 그게 적절한 건지, 도움이 되는 건지 또 혹여라도 개입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지는 않는지 이런 걱정들 때

문에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고 하는,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국내에 끼치는 영향들을 고려했을 때 그런 관심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잘 풀렸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한 마디씩 거드는 것이라고 장관님께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혹여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계신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무슨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성민 위원 국회의 정당한 이야기를 ‘한마디 거드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간사가.

○김원이 위원 조심스럽다고…… 아따, 발언하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진짜?

○위원장 이철규 계속해서 질의하시지요.

○김원이 위원 저 스톱 좀 시켜 놓으세요.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세요.

○박성민 위원 국회의원들이 발언하는 것을 ‘한마디 거든다’ 그렇게 표현하는 자체가 문제 있는 거잖아.

○김원이 위원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조심스럽다고. 그리고 제 얘기 하잖아요. 마지막 날 왜 그러세요?

○박성민 위원 한마디 거들…… 그러면 김원이 간사도 지금 한마디 거들려고 이야기하나?

○김원이 위원 예, 한마디 거들어 보려고요.

○박성민 위원 한마디 거들려고?

○김원이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세요.

○김원이 위원 조심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제 얘기 이어 가잖아요.

○박성민 위원 국회의원 발언이 한마디 거드는 거가?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빨리……

○김원이 위원 그러면 우리가 당사자입니까?

○박성민 위원 당사자가 아니고, 국가에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김원이 위원 그러니까 조언하는 거지요.

○김종민 위원 발언 들어 봐요, 좀.

○김원이 위원 관심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조심스럽다고 하면서.

○박성민 위원 한마디 거든다는 그 발언이 동료 위원을……

○김원이 위원 너무하시네, 진짜.

○박성민 위원 뭐라고?

○김원이 위원 너무하시네요.

○박성민 위원 너무한다고? 이 사람이, 뭐? 너무한다고?

○김원이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발언 잠시……

○박성민 위원 말을 똑바로 하라고. 한마디 거드는 게 뭐야?

○위원장 이철규 아니, 박성민 위원님……

○박성민 위원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

○김원이 위원 아니,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자, 두 분 다 중지……

○박성민 위원 한마디 거든다는 게, 그게 국회의원의 발언, 동료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집행부에 한마디 거든다 그렇게 폄하해도 되나!

○김원이 위원 노사관계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노사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개입하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부담된다고 얘기했지요.

○박성민 위원 정상적인 발언을 한마디 거든다고 표현하면 안 되잖아.

○구자근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여기 한마디씩 다 하도록 해 주이소.

○위원장 이철규 아니요, 안 돼요. 중단하고.

계속하세요.

○김원이 위원 그만합시다. 진짜, 발언시간에 왜 그러십니까?

○박성민 위원 한마디 거든다는 그 표현이 맞나?

○위원장 이철규 계속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박성민 간사님, 박성민 간사님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라도 한 적 있습니까? 그리고 김성원 위원이 얘기할 때……

○박성민 위원 동료 위원들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그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거니까 그걸 걱정할 선에서 질의하고 답변하고 또 장관도 아직 말할 단계가 아니다 하고 지나가고 있는데 뭘 한마디 거들어?

○김원이 위원 아니, 제 얘기,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건데 왜 그걸 강요하십니까?

○위원장 이철규 박성민 간사님, 김원이 간사님, 두 분 간의 논쟁은 그만하세요.

○김원이 위원 저 발언할게요.

○박성민 위원 정상적인…… 간사가, 회의 진행에 책임 있는 사람이 야당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든다……

○김원이 위원 간사님, 거기까지 하세요. 왜 그러세요?

알았습니다.

○박지혜 위원 위원장님, 그만하시지요.

○위원장 이철규 그러면 계속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이 간사님.

○박성민 위원 동료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드는 거니까 정부에서 알아서 그렇게 들으라 그 말……

○송재봉 위원 아니, 이렇게 현안질의 안 하기로 한 걸, 왜 계속 그러니까?

○위원장 이철규 다른 위원님들 좀 계시고, 두 분 사이 내버려두세요.

○김원이 위원 아따, 박 간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위원장 이철규 계속하세요, 빨리. 김원이 간사님 빨리 발언하세요.

○김원이 위원 아니, 내가 누구의 발언을 갖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심스럽다 그러잖아요.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 조심스럽다 그랬잖아요.

○박성민 위원 위원들의 정상적인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거드는 거니까 그냥 한쪽 귀

로 듣고 흘려라' 이런 표현이었잖아.

○김원이 위원 아따, 그렇게 들으셨어요?

○위원장 이철규 마이크 3분 30초 꺼.

○김원이 위원 저 할게요. 4분 주세요.

○위원장 이철규 계속할 거예요? 그러면 하세요.

○김원이 위원 마저 해야지요.

○박성민 위원 뭘 한마디 거들어, 다른 사람이? 거드는 것을……

○위원장 이철규 자, 마이크 꺼 놓고……

○김원이 위원 아따, 왜 그러세요, 진짜?

○박성민 위원 누구는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나? 적정하게 입 닫고 있는데 뭘 자꾸 일일이 그렇게 따지고 한마디 거든다고 하노?

○위원장 이철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요.

○박성민 위원 간사쫘 되면 한마디 거들지 말고 가만히 있으소, 다른 사람 발언하게.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박성민 간사님 두 분 간사님, 일단 두 분 다 말씀 중단 해 보세요.

○김종민 위원 간사 간에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철규 우리 위원회 비교적……

○김원이 위원 아니……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동료 위원이 발언할 때 때로는 적절치 않다 또는 귀에 거슬린다 하더라도 가급적 발언 권은 보장해 주는 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발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바람직한 모습일 것 같습니다.

김원이 간사님 계속 3분 30초 넣어 드리고, 진행하십시오.

○김원이 위원 4분 주세요, 4분.

○위원장 이철규 예, 4분 드려요. 4분 드리고, 하세요.

○김원이 위원 저희가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삼성뿐만 아니라 반도체 R&D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이 부족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장관님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래서 삼성전자 경영진에서 요구했던 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 넣고자 하는 주장에 대해서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도체 지원 특별법에서도 그걸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김원이 위원 그렇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노동자들의 처우와 보상체계를 구축하라, 특히나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R&D 인력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상을, 그런 합리적 체계를 구축하라고 무던무던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 경영진은 그런 체계를 구축하지 못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을 만들어 낸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이 상황에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반도체 호황기를 맞아서 지금 주식이나 혹은 대한민국 경제가 반도체 덕분에 살

아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갖고 있는 국민경제의 비중이 큰데 이 상황에서 정말 이 좋은 분위기를 깰 수 있는 삼성전자의 파업은 막아야 된다고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런 호소를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의 성과가 삼성만의 성과나라고 하는 국민들의 얘기에 삼성 노조가 귀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호소를 드립니다. 정부의 반도체 지원, 정책적 지원이 있었고 삼성 협력업체들의 헌신이 있었고 또 삼성 내 다른 계열사들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삼성 반도체가 오늘의 반도체로 성장할 수 있었고 국민경제를 떠받드는 대들보가 되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파업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이런 것에서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가 좀 적절한 수준에서 중재를 할 수 있으면…… 정부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들이 있잖아요,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과유불급 물극필반이라는 말씀을 쓰시면서 ‘힘세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해지지 않는다, 연대하고 책임지면서 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위기를 다시 기회로 만들어 내자’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이런 국민들의 우려들을 삼성이나 삼성 노조 쪽에 충분히 전달을 해서 이런 문제가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들, 적절한 역할들을 요청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이 위원 대책이나 대답을 하기 바라는 것은 아니고 국민들의 호소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김원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민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오세희 위원 저도……

○위원장 이철규 의사진행발언요?

그러면 박성민 간사 의사진행발언 다음에 오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희 위원 짧게만 할게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박성민 간사님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박성민 위원 지금 온 국민이 삼성전자의 노사관계에 집중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정부가 다 잘하고 정부가 다 훌륭하다면 국회가 왜 있겠습니까? 때로는 국민적 시각에서 또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정부를 독려할 수도 있고,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습니다.

○박성민 위원 그래서 오늘 이 삼성전자 사태를 원만하게 잘 해결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질의를 드리는 거고, 삼성전자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기를 바라는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할 것도 있고 가져왔습니다만도 장관님께서 신중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있으신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의 질의나 발언이나 또 여러 가지 조언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또 검토하시고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위원님들 하시는 발언을 꼭 참조해서서 원만하게 조속히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오세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한테 하십시오.

○오세희 위원 오늘 사실은 우리 산자위가 마지막 회의지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법안 상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그 결과물이고 또 책무고 국회의원들은 굉장히 이런 국회 활동하는 보람도 느끼는 건데 법안 상정이 좀 객관적이고 골고루 됐으면 좋겠다. 지금 산업부와 중기부를 보니까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골고루 법안 상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요?

중기부를 보면 지금 43건, 산업부가 어떤 분은 법안 상정이 10개도 된단 말이지요. 객관적이고 마음을 비우고 의원들의 것을 모두 골고루 상정해야지 여기 법안 상정에도 오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위원들 얘기도 듣고 이번에 어떤 게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런 각자 의견에 대해서 취합해 가지고 간사님들이 결정하고 이런 단계가 있어야지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걸 너무 일방적이에요. 아니, 일은 실컷 하고 43건에 하나도 안 오고, 산업부도 이게 뭘니까? 보십시오. 나는 볼펜으로 체크했어요, 좀 놀라 가지고.

이게 끝나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앞으로 산자위의 법안 상정이 좀 골고루, 객관적, 개인 의견, 국회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오세희 위원님.

○김원이 위원 이것은 법안 발의한 것 그냥 올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철규 잠깐만요, 간사님 가만히 계세요.

○오세희 위원 산업부 하나도 안 올라갔잖아요. 저기, 중기부요.

○위원장 이철규 오세희 위원님 그다음에 위원님 모두에게 공지합니다.

상정은 선택적 상정을 하지 않고요 날짜로 끊어서, 법안을 제출한, 발의한 날짜를 끊어서 상정을 하는데 오늘은 2026년 3월 말까지 제출한 모든 법안을 전부 다 일률적으로 상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4월 1일 이후에 발의한 법안은 다음 기회에 상정될 예정임을 공지드립니다. 3월 말 이전에 발의된 법안이 상정되지 않은 법률안은 없다는 사실을 알려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 질의로 서일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일준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발언을 하고 장관님께서도 지난 27일 날 삼성전자 파업 관련 기사단 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이익은 노사, 경영진과 노동자들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장

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

○서일준 위원 저는 장관님의 의도가 무엇이든 간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예고했는데 이 시점에 이런 발언이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그런 발언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삼성전자 노사가 빨리 원만히 합의해서 정말 대한민국 경제에 큰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지난 5월 13일 날 이재명 대통령께서 울산 방문해 가지고 K-조선 미래 비전 간담회 주재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대통령께서 생태계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선업은 호황이라고 하지만 지역경제는 엄청나게 불황입니다. 그런데 생태계가 가장 취약한 지역경제는 어떻게 살리겠다라는 그런 정책은 빠져 있습니다. 조선업 생태계는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협력업체에 이어지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태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이, 본 위원이 이 법안 한 지가 벌써 한 2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저희 법안소위에서 토의를 했습니다. 하다가 정부 측에서 다음번 법안소위에 더 좋은 정부안을 마련해 가지고 상정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빠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때 산자위…… 서 위원님, 항상 우리 조선 그리고 생태계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서일준 위원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한 4개 정도 관련법이 있어서, 법안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이에 말씀하신 대로 중소 조선사, 조선사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지금 한참 준비 중이고 빠른 시일 내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빠른 시일이 언제입니까, 도대체? 하도 속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저희들이 6월, 7월 안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6월 안으로?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선 지원 특별법 6월 안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현장에서는 주 52시간 유지하는 하자, 그다음에 병역특례제도가 지금 중소기업만 해당이 되는데 조선업 대기업에는 같이 포함하자 이런 내용까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면밀히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번에 대통령께서 주재한 간담회 내용 중에 숙련공 인력 부족에 대해서 지원하겠다 하는데 장관님, 숙련기술공 공제사업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서일준 위원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원청, 협력사, 지자체, 당사자—근로자, 협력업체 근로자입니다—각각 200만 원씩 내면 2년 뒤에 800만 원 주는 제도인데 이것 윤석열 정부에서 만든 제도인데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걸 좀 더 확대하려고 하는

게 노동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확대가 아니고요. 작년에 5500명이었어요. 금년에 1250명, 4분의 1로 줄어 들었습니다. 이것 확대해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4분의 1로 축소된 사업입니다. 장관님께서 내용도 모르시잖아요. 노동부하고 협력해서요 이 사업이 지난 윤석열 정부보다 더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그다음에 결국은 조선 인력들 인건비인데요, 인건비를 많이 줄 수 있는 것은 화물창이라든지 FLNG 원천기술료라든지 이런 것을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LNG 화물창 문제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장관님? 아마 장관님 부임했을 때부터 화물창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화물창 다 만들어 놓고 로열티 주고 있는 겁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화물창 국산화 관련해서 금년……

○서일준 위원 지금 우리 업체에서 국산 기술 화물창 다 만들어 놓고도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에서 이것 조정을 해 줘야 되는데 정부에서 방관하고 있는 겁니다. 1년 전에 장관님 처음 취임할 했을 때부터 제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지금 다 마무리가 되어 가고요.

○서일준 위원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금년에, 제일 중요한 게 실증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실증하는 게 올 하반기에 나올 예정입니다.

○서일준 위원 하반기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장관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 날짜는 저희들이…… 이게 지금 법률 소송 걸린 것도 있고 해서 확정은 안 하는데 저희가 가스공사 그리고 관련된 업체들하고 계속 조율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원래 아시다시피 국산 선박을 하려면 앞으로, 원래는 한 3년 뒤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저희가 기관들 조율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 실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일준 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는 화물창 로열티 안 주고 할 수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그게 일단 실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서일준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가능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실증을 발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일준 위원 다음 FLNG 기술료 문제는, FLNG 기술료는 한 척에 얼마쯤 나가는지 장관님 혹시 아세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일준 위원 한 척당 900억 정도 나갑니다. 이런 기술료가 많이 나가니까 외국인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역경제가 그토록 힘든 겁니다. 조

선업 때문에 국가경제나 이런 것은 업이 되지만 지역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왜? 단가를 맞춰야 되니까 내국인 근로자를 못 쓰고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예요.

적극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현안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안 나온 게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철규 존경하는 정동만 위원님, 관련된 질문입니까?

○정동만 위원 아니, 이게 삼성전자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저렇게 호소하시는데 2분 내로 하세요, 2분 내로.

○정동만 위원 1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예, 1분 내로 하시지요.

○정동만 위원 장관님, 긴급조정권에 관해서 언급을 하시던데 노동부장관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발언을……

○정동만 위원 그것 사후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노동부장관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일단 오늘 내일은 제가 발언을 가급적이면 삼가는 게 좋겠습니다.

○정동만 위원 대답을 하시면 되지요.

협의를 좀 하시고 있지요?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고용노동부장관님하고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긴밀하게 논의하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철규 됐습니까?

○정동만 위원 예.

○위원장 이철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서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오후 2시에는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고 내일 오전 10시에는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각각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오후 2시에는 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법률안 의결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립니다.

내일 오후에 열릴 전체회의는 법률안 의결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우리 산업통상위원회 22대 전반기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수도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일 2시에 전체회의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정부 내에서 현안과 관련된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2시에는 국무위원들 배석 없이 차관들 참석하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자 하기 때문에 오늘이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전반기 우리 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 장관들 계시는 자리에서 우리 위원회의 지난 2년을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장관님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우리가 22대 국회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감당해 온 책임의 무게를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전반기 국회는 어느 때보다 급변하는 국제질서와 복합적인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패권 경쟁 그리고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지속,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통상 갈등 그리고 최근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까지 우리 산업과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컸습니다.

특히 최근 중동 전쟁으로 인해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글로벌 해상물류와 에너지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게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바로 산업경쟁력과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도 에너지 수급 안정과 공급망 대응체계, 수출기업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안보고를 받아 점검하고 관련 지원 입법을 하는 등 국가적 위기 극복에 보폭을 맞춰 왔습니다.

또한 전반기 동안 우리 위원회는 에너지와 통상,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해 왔습니다. AI와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더 이상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이른바 에너지 3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매우 뜻깊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들은 단순한 개별 입법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력망 확충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첨단산업 육성의 필수조건이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체계 마련은 원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최소한의 국가적 책임입니다. 해상풍력 특별법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여야 간 여러 가지 이견 속에서도 국가 미래를 위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수요 둔화로 구조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대응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와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함께 고민해 왔습니다. 특히 단순한 재정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체질 개선과 미래 경쟁력 확보라는 방향 속에서 논의가 이루어졌고 각각의 개별법을 제정하여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도체산업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반도체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시간 완화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하기로 했음에도 마무리 짓지 못한 아쉬움은 남아 있습니다.

통상 분야 역시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상호관세 부과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와 공급망 중심의 통상질서 재편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대외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대미 통상협상 과정에서 자동차, 철강, 배터리, 반도체 등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여 국익 중심의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견제와 지원 역할을 병행해 왔고 새로운 통상 규범 속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을 주문해 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금리·고물가·고유가와 내수 침체 속에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 위원회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벤처와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술창업 지원, 중소기업 기술 탈취 방지책 마련, 지역경제 회복 방안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 왔고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들을 통과시키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전반기 동안 마련한 논의와 입법의 성과들은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력과 미래 경쟁력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혁신을 이어 가기 위해서는 국회가 더욱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와 민생경제 회복은 어느 한쪽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과제이며 기업과 노동자,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있는 발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반기 활동을 마무리하며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족한 점도 있었겠지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전반기 국회는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정치적 갈등과 대립 속에서도 국익과 민생이라는 큰 원칙 아래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책임진다는 사명감으로 현안을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 주셨기에 의미 있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3월에는 열일곱 분의 여야 위원들께서 중국의 AI, 반도체, 로봇 등 첨단산업 현장을 함께 시찰했는데 이는 국회 역사상 전례가 없는 단합된 행보이자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경쟁력과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고민하는 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입장이 같을 수는 없기에 때로는 격렬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만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모두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를 비롯한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국회 수석전문위원실과 보좌진 등 지원인력 여러분의 헌신에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어지는 후반기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돼서 우리 위원회가 대한민국의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정책, 중소기업정책, 지식재산정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위원회로 굳건히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면질의한 위원님들은 계시지 않습니다.

장관님들, 아마 오늘이 전반기 마지막인데 소회를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하실 말씀 있습니까?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작년 7월 청문회 했던 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끝난다니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빠를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여야 없이 정말 대미 협상부터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중동발 위기까지 같이 한마음으로 다 잘되기를 바라 주셨던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한 조금 전에 박성민 간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소한 우리 상임위는 여야가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노력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많이 배웠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디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 산업부와 우리 산업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두 분 간사님, 여러 위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한성숙 중기부장관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지난 10개월 동안 위원님들과 같이 국정을 논의하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처음에 인사청문회 할 때 위원님들이 주셨던 우려들이 기억이 납니다. 대기업 출신으로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어떻게 알 수 있겠냐라는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처음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했던 것이 아까 구자근 위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폐업하고 있는 소상공인, 위기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떻게 먼저 알릴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위주의 산업구조 속에서 계속 생태계에 대한 관심들을 가져 주셔서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에 많은 법안들도 만들어 주시고 본회의 때마다 제가 어떤 위원님들이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에 반대하시는지 중소기업 관련해서 어떤 분들이 반대하시는지 보는데 정말 소상공인 관련된 법안에는 모든 위원님들이 전원 찬성하시고 있는 것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부분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창업 관련된 부분에서 청년들의 새로운 기회로 창업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셔서 창업을 또 하나의 성장의 경로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창업, 벤처, 스타트업이 우리 경제의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된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간사님들 그리고 위원장님 무엇보다 굉장히 균형감 있게 많은 부분들 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님.

○**지식재산처장 김용선** 지식재산처가 지난 10월 출범해서 기틀을 잡고 또 방향을 설정하는 데 위원장님과 두 분 간사님 또 위원님들께 많은 지도를 받았고 도움을 받았습니

다.

제조업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진 지식이 또 창의적 아이디어가 자산이 되고 재산이 되어서 국부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고민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욱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철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과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박희석 수석전문위원 및 보좌진 등 국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10인)	권향엽 김원이 김한규 박지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5)
	구자근 박상웅 ◎박성민 서일준	국민의힘(4)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중소벤처기업(9인)	◎김원이 오세희 이재관 장철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5)
	강승규 김성원 장동혁 정동만	국민의힘(4)
예산결산(10인)	권향엽 오세희	더불어민주당(5)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이재관 ◎정진욱 허성무	
	강승규 구자근 박상웅 정동만	국민의힘(4)
	김종민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청원심사(5인)	이연주 이재관	더불어민주당(2)
	◎서일준 장동혁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7인)

구자근 권향엽 김성원 김원이 김종민 김한규 박성민 박지혜 서일준 송재봉
오세희 이연주 이재관 이철규 장철민 정동만 정진욱

○청가 위원(4인)

강승규 김성환 박상웅 허성무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전문위원 성소미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산업통상부
장관 김정관
차관 문신학
기획조정실장 오승철
산업자원안보실장 양기욱
정책기획관 정상용
지역경제정책관 김규성
중견기업정책관 이규봉
첨단산업정책관 최우혁
산업공급망정책관 송현주
무역정책관 나성화
투자정책관 남명우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장 박종섭

적합성정책국장 조용환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단장 제경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성숙
제1차관 노용석
제2차관 이병권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중소기업정책실장 박용순
창업벤처혁신실장 목승환
소상공인정책실장 최원영
정책기획관 이순배
중소기업정책관 김대희
글로벌성장정책관 심재윤
기술혁신정책관 황영호
지역기업정책관 권순재
창업정책관 조경원
벤처정책관 김봉덕
소상공인정책관 김정주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 박상용
상생협력정책국장 이은청
지식재산처
처장 김용선
차장 정연우
기획조정관 박현희
지식재산정책국장 김일규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 김용훈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 박진환
특허심사기획국장 양재석
특허심판원
제2수석심판장 구영민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전재수	.	더불어민주당	2026. 4. 30.
추미애			

○의안 회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2)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07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7)

이상 3건 4월 6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7)

4월 7일 회부됨

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7.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7.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59)

이상 2건 4월 8일 회부됨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5)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86)

이상 2건 4월 9일 회부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9.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02)

4월 10일 회부됨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0.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35)

4월 13일 회부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7)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69)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3.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273)

이상 5건 4월 14일 회부됨

전략광물 비축 및 해외개발 지원법안

(2026. 4. 1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8)

노후산업단지 안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4. 1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59)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3)

이상 3건 4월 16일 회부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9)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81)

이상 2건 4월 17일 회부됨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2)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7.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15)

이상 2건 4월 20일 회부됨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0.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44)

4월 21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1. 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3)

4월 22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8)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89)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2)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3)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495)

이상 5건 4월 23일 회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586)

4월 24일 회부됨

기업경영의 계속성 강화를 위한 기업승계 지원 특별법안

(2026. 4. 28. 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69)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8. 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4)

한국석유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8.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8.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78)

이상 4건 4월 29일 회부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9.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9.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86)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696)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9.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09)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29.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17)

이상 5건 4월 30일 회부됨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0.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3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0.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49)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30.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58)

이상 4건 5월 4일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8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794)

이상 2건 5월 6일 회부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6.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15)

5월 7일 회부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7.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881)

5월 8일 회부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8.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02)

5월 11일 회부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11.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13)

5월 12일 회부됨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13.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47)

5월 14일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5. 14.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64)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6. 5. 14.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1)

이상 2건 5월 15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허영 의원·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08)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26)

이상 3건 4월 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가인프라기본법안

(2026. 4. 6. 송석준 의원·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131)

4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경남부산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2026. 4. 14.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2)

4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3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 4. 15.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360)

이상 2건 4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한민국과 에콰도르공화국 간의 전략적경제협력협정 비준동의안

(2026. 5. 1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8960)

5월 1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2026. 5. 1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8974)

5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구분	대통령령	부령	총리령	훈령	예규	고시
산업통상부	65	49	-	47	10	389
중소벤처기업부	26	19	-	43	4	96
지식재산처	8	12	10	39	6	54